일반논평 21: 제10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1. 본 일반논평은 일반논평 9 (1982년 제16차 회기)를 반영하고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이를 대체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항은 그 나라의 법과 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 즉 감옥, 병원, 특히 정신병원, 구금시설 혹은 교정시설이나 기타 장소 등에 감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당사국은 이 조항에 명시된 원칙이 자국 관할권 내의 사람이 수용된 모든 기관과 시설에서 준수되어야 함을 보장해야 한다.

3. 제10조 1항에서는 당사국에게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동 규약 제7조 상의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보완한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의료나 과학 실험을 포함하여, 제7조에 위배되는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박탈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곤경이나 압력도 당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존엄성은 자유로운 이들의 그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제한된 환경 내의 불가피한 제약들을 조건으로 동 규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4.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처우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이다. 따라서 최소한 이 규칙의 적용은 당사국의 가용 물적 자원에 달려 있지 않다. 이 규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5.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재소자 처우에 적용되는 관련 유엔 기준에 대한 자국의 적용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7), “모든 형태의 억류 또는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1998),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강령”(the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1978),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로부터 재소자 및 피구금자의 보호 차원에서 의료진, 특히 내과의의 역할과 관련된 의료 윤리 원칙”(the Principles of Medical Ethics relevant to the Role of Health Personnel, particularly Physicians, in the Protection of Prisoners and Detainees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2) 등이 있다.

6.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제10조 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각국의 입법적, 행정적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상기한다. 또한 본 위원회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규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감시하기 위해 관할당국이 취한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하다고 본다. 당사국들은 교정시설(penitentiary establishments)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공정한 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7. 또한 본 위원회는 적용 가능한 다양한 조항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와 훈련에 있어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 또한 그것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에 의해 엄격하게 고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함을 상기한다. 또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이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러한 규칙들이 존중되도록 하고, 만약 그러한 규칙이 무시되었을 경우 청원을 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8. 본 위원회는 제10조 1항에서 규정한 원칙들이 제10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형사사법(criminal justice)에 관하여 당사국들의 보다 구체적인 의무에 대한 기초를 구성한다는 점을 상기한다.

9. 제10조 2항 (a)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기결수와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격리가 필요한 이유는, 제14조 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동시에 향유하는 미결수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당사국들은 보고서에서 기결수와 피고인의 격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시하고, 피고인과 기결수의 대우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을 설명해야 한다.

10. 기결수에 관한 제10조 3항에 대해,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교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교정제도는 단순히 보복적이어서는 안 되며, 본질적으로 재소자의 교정과 사회재활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당사국들은 재소자의 석방 후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하며, 그러한 지원의 성공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1.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이 제공하는 정보에는 재소자의 재교육을 보장하는 입법적, 행정적 규정, 혹은 실질적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 위원회는 교수, 교육, 재교육, 취업 지도, 훈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해서, 그리고 교정 시설 내부와 외부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노동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바이다.

12. 또한, 제10조 3항에 규정된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는 구금 기간 동안 적용되는 특정 조치들, 예를 들어, 기결수들이 개별적으로 받는 처우, 이들이 분류되는 방법, 징계 제도, 독방 감금, 중경비 구금(high- security detention), 외부와의 접촉이 보장되는 조건(가족, 변호사, 사회 복지와 의료 서비스, 비정부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13. 게다가 본 위원회는 몇몇 당사국들의 보고서에는 미성년 피고와 미성년 범죄자에 주어지는 처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제10조 2항 (b)는 미성년 피고인의 경우 성인과 격리하도록 규정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몇몇 회원국들은 이것이 동 규약의 강제 규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동 조항은 또한 미성년자와 관련된 소송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규정을 실행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10조 3항에 의거, 더 나은 미성년자의 교정과 사회복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들과 격리되고, 노동 시간의 단축, 친척들과의 접촉 등 구금의 조건 면에서 미성년자의 나이와 법적 지위에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는 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당 사회와 문화 및 기타 조건에 비추어 각 당사국이 결정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회의 견해는 제6조 5항에서 시사하는 바대로 최소한 형사사법(criminal justice)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18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은 미성년자로 취급되는 연령층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각국은 베이징 규칙 (the Beijing Rules, 1987년)으로 알려진 '소년사법운용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